

한화갤러리아(주)

기업지배구조헌장

2023. 5. 10



전 문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일류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성장을 지향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지배구조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상호 견제 및 균형 있는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제1장 주 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필요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 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이사의 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선임의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감 사 기 구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주주,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임직원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한다.
- ② 회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신의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자 노력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6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법적 요구 사항 외에도 필요한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정보이용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17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3년 5월 1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 공표한다.